

발간등록번호

한사협-2017-10-013

---

## 2017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

---

2017



보건복지부

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 
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

■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높기 위해 만들었습니다.  
※ 법령개정 등으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

■ 문의처
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: 02-786-0845 ([ic.welfare.net](http://ic.welfare.net))
- 보건복지 콜센터: 129번
-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: 044-202-3014, 3022

## 목 차

<b>제1장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</b>	1
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	1
제2절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	2
<b>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</b>	4
제1절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	4
제2절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	5
<b>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이수교과목</b>	18
제1절 이수과목 수	18
제2절 이수과목 내용	19
<b>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</b>	21
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	21
제2절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	25

**제5장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..... 28**

제1절 제도 연혁 .....	28
제2절 시험 관리기관 .....	28
제3절 응시자격(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) .....	28
제4절 시험과목 및 문항수(내점) .....	30
제5절 합격자 결정 .....	30
제6절 기타사항 .....	30

**제6장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..... 31**

제1절 목 적 .....	31
제2절 교육과정 .....	31

**제7장 자격증 발급 ..... 32**

제1절 자격증 발급업무 흐름도 .....	32
제2절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.....	32
제3절 자격증 발급 .....	33

**■ 각종 서식 ..... 39**

**■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..... 43**

**■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..... 53**

# 사회복지현장실습

## 세상

### 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

#### □ 법적기준

##### 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[별표1]

- 실습기관 기준: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
- 실습지도자 기준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
- 실습시간 기준: 이수학점 3학점,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

#### □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방식

##### ○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

○ 적성 실습 비: 실습생 1인당 10만원 이내(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하나, 실습 비 이외의 '후원금', '실습 이외의 교육비' 등을 병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됨)

○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(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,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)

○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는 동일할 수 없음

○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: 1회기(1학기, 여름방학, 2학기, 겨울방학) 기준 5인 이내로 하며,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

○ 실습지도교수 기준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권고함

① 석사학위 소지자: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,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

② 박사학위 소지자: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,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

\*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습지도 전임교수를 채용하여 가능한 한 전임 교수가 실습지도를 담당하도록 권장함

○ 실습지도교수 1인당 실습지도 인원: 한 학기당 40인 이내,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6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권고함

○ 신천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,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'표준실습교육매뉴얼(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간)', '사회복지학 교과복지취서(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)' 등을 참고해 실습생을 선발할 것을 권고함

○ 사회복지현장실습 1일 이수시간

① 「근로기준법」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

②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

\* 신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아침·점심·저녁 식사시간은 제외.

단,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

\* 신습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상 기준을 넘기는 실습시간 등은 실습생, 실습기관, 학교(교육기관)가 상의하여 실습계약과 신습계획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, 상의하여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심사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○ 실습기관, 실습지도자, 신습시간에 대한 법정기준 미충족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말급 불가(학교(교육기관)측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과 번개워)

#### □ 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

-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법정양식의 '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'를 제출하여야 함.  
(실습확인서 양식은 실습을 이수한 해당연도 이전 양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.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)
  - 실습확인서 제발급 시 확인 날짜는 재발급 받은 날짜로 작성(양식은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)
  - 기관폐쇄로 인한 실습확인서 제발급이 안 될 경우 학교(교육기관)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, 그 사본을 원본대조본 받아 제출(원본대조필은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,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, 학과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)
  - 실습지도자나 실습지도교수의 부재(사망, 퇴사 등)로 인한 서명 확인 불가능 시, 실제 지도받은 이의 성함을 명시하고, 서명반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 서명
    - ① 실습지도자 부재시, 기관대표자 또는 현행 실습지도자가 대리 서명하고,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서명자 개인도장 날인
    - ② 실습지도교수 부재시,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,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장 직인(개인도장은 인정 안 됨) 날인
  - 신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실습지도자, 실습기관, 실습지도교수 서명은 모두 확인돼야 함(부사하거나 스캔 받아 인쇄한 서류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, 사본제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원본대조본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)
    - ① 기관에서 원본대조본을 받을 경우: 원본대조필 도장,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,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, 기관 직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
    - ② 학교(교육기관)에서 원본대조본을 받을 경우: 원본대조필 도장,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,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, 학과장 직인(개인

노장은 인정 안 됨)이 모두 있어야 인정

-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- 실습이수 중 실습지도자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지도하여야 하며 신습확인서는 전·후 지도자에게 각각 확인받아야 함(총2장 이상)
- 군인, 공익근무요원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실습을 시행할 수 있음
-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
-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, 마을 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,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
- 아래의 기관에서는 참고사항이며, 실습기관, 실습지도자, 실습시간은 학교(교육기관)와 상의하여 결정하되, 반드시 법령 기준을 준수해야 함.
  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
  -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등)
  -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, 학교, 시민단체 등

※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행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에 등록된 기관이 아닌 경우,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시 등록심사요건에 준하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## 제2절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

□ 시행 기관: 한국사회복지사협회

### □ 시행 목적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기준에 충족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정보제공
-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의 전적 수준 향상

### □ 주요내용

-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

- 등록시스템 홈페이지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(<http://lic.welfare.net>)
  - 등록내용: 법적 요건(실습시간, 실습지도자, 실습기관), 실습계획, 실습비, 실습지도인원 등

※ 사회복지현장실습 고시 제정을 통하여,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 의무화 시행 예정

- 기관등록서 첨부서류

- ① 시설신고증(법인의 경우·법인설립허가증, 성관)
  - ② 실습지도자 경력·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  - ③ 신습계획서(실습총시간이 포함되어야 함)

### □ 실습기관 등록기준

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·시설, 기관 및 단체

-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·사회복지시설
  - ②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
    - 사단법인·재단법인: 광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

### 비영리 단체

- \* '사회복지사업'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'정의'를 말함
  - 공공기관: 자원봉사센터 등
  -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, 상담소, 학교, 교정기관, 시민사회단체 등

#### 〈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〉

- \* 안건번호 15-0247, 회신일자 2015.06.23.
- \* 회답내용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
- \* 이유(요지):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, 해당 사업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

※ 관할 관청의 인·허가를 받은 상태 또는 신고된 상태어야 함. 설치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 불가. 심사 시 정관, 실습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### □ 실습지도자 등록기준

-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
-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인정범위
  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 된 범인·사식,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상근한 경력
  - ※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인정 직종은 '자격관리센터(<http://lic.welfare.net/>)' 내 열린광장에서 확인 가능
  - ※ 시설신고증, 경력·재직증명서, 업무분장표, 정관 등을 통해 심사함
  - ※ 실습지도자의 경우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직위가 대표일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.

〈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〉

- \* 관련문서: 법제처 법령해석종결과-3807(2014.11.18.)
- \* 회답내용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 경험만을 의미
- \* 대법원 1985.9.10. 선고 85누434판결례 참조

□ 참고사항

- 등록내용과 달리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실습 운영 사항이 확인될 경우,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, 실습기관 등록 취소, 현장准入 등을 시행할 수 있음
- ※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실습등록제 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 진행